

공사 도급 계약서

계약 내용	발 주 자 (도 급 인)	광명영화 I-ni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 사 명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공사
	공 사 장 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48번길 66
	공 사 기 간	착 공 - 2026년 06월29일 준 공 - 2026년 07월 17일
	계 약 금 액	일 금 : 오천오백육십만오천원정(W55,605,000) 공급가액 : W50,550,000 · 부가가치세:W5,055,000
	대금 지급 조건	· 계약금: 계약증권 발행 후 20% 일금 일천일백일십이만일천원정(W11,121,000) · 중도금: 없음 · 잔 금: 준공검사원 제출 완료 후 80% 일금 사천사백사십팔만사천원정(W44,484,000)
	대금 지급 방법	계좌 입금[우리은행 1005-903-214694 예금자:더플레이(주)]
	계약 이행 보증금	계약금액의 (20%) 계약이행 보증 증서로 제출
	하자 보수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 보증 증서로 제출
	하자 담보 기간	준공일로부터 24개월
지 체 상 금 율	계약금액의1일 1/1000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붙임의 문서를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견적서

2026년 06 월 12 일

도 급 인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48번길 66
 상 호 : 광명영화 I-ni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심 상 보
 전화번호: 02 - 2060 - 8751



수 급 인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돌길 356
 상 호 : 더플레이 주식회사
 대표자 : 김 찬 휘, 송 인 우
 전화번호: 031 - 943 - 4916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조(기본원칙 및 계약의 목적)

도급인(이하 “갑”이라 함)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함)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며, 계약의 목적은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공사” 계약 체결을 기초로 한다.

제 2조(계약이행 보증)

“을”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이행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계약이행 보증금”이라 함)을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공사비 내역 견적서)

“을”은 계약 체결 시 견적서등 계약 관련 서류(특허증 사본)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 기성 부분 검사, 준공 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 사항이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 인정될 경우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이 공사 감독원을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을”은 아파트 관계자를 공사감독원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 5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서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③ “갑”은 현장대리인이 근무태만,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공사수행에 부적합하다 인정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조(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① “을”은 산업 재해 예방과 사고시 조치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 및 산재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지도사를 공사현장에 상주 감독을 병행하여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사중 발생한 “을”의종업원의 산업재해 및 “갑”의 재산 및 인명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기타 여하한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지지 아니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도 “을”이진다.
- ③ “갑”과 “을”은공사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7조(응급조치)

-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시공 상 긴급 부득이 한 경우나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공사기간의 연장)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강우 및 강설로 인한 시공의 애로, 소요 자재의 이상 품귀 현상, 공사감독관의 공정 확인 지연에 따른 지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을”은 공사기간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부적합한 공사)

-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제안내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안내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제안내역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쌍방이 사전 확인하여 제안한 내용이 공사 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제안내역을 변경한다.
- ② 제1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2. 공사비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 비목의 단가는 제안내역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한다.
 -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 ③ 상기 1항 및 2항 이외의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실비를 기준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11조(준공)

- ① “을”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공사완료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제12조(지체상금)

- ①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1/1000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 대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지진, 전염병, 화재 및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경우
2. 소요 자재 이상 품귀 현상에 따라 “갑”에게 “을”이 명백한 사유를 설명, 협의한 경우
3.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작업이 필요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공사를 중지한 경우
4. “갑”의 공사 관리감독원이 공정 확인을 부득이하게 지연하여 발생한 경우
5. 산업 재해나 기상 악화로 인한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쌍방이 협의한 경우
6. “갑”의 현장에서 민원, 또는 일반 상관례상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할수 없는 상황일 경우

제13조(공사대금 지급)

① 계약서에 대금지급조건에 따른 지급 조건인 경우 “을”은 기성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 결과와 제5조의 공사비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서에 따라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준공 완료 후 일부 시설 보완과 기타 불분명한 사유로 전체 시설물 공사 대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없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함)을 준공 후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사의 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② “을”은 준공 검사를 득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공사 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갑”이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제15조(“갑”의 계약 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을”의 계약 해제 등)

- ①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경우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정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 보류, 기성 및 준공 검사 지연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쌍방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공사 시공 및 계약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 ①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외 사항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협의를 한 후 쌍방의 합의로 이를 해결한다.
-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대한상사 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0조(특약사항)

-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1. 준공은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착공계 제출후 실제공사 시점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를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